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,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액·임의 보조단체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·임의 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(ceiling)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한 것으로
-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 및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부합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미루어 볼 때, 우리군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조례안 제6조제1항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은 고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?
- 답 : 고성군 각종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중복된 부분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기존 운영중인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4.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